

● 중소기업부공고 제2023-457호

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5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**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**

1. 개정이유

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이 개정(법률 제19505호, 2023. 6. 20. 공포, 2023. 12. 21. 시행)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,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(안 제7조의3 신설)

-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,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

나.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(안 제11조의4 개정)

-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

## 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(어진동 666) 세종파이낸스 3차
- 전자우편 : chlee123@korea.kr
- 팩스 : 044-204-7849

### 4. 그 밖의 사항

-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(전화 044-204-7832, 팩스 044-204-78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)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비스(이하 “업무지원인 서비스”라 한다)는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경제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경제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.

1.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
2. 여성 중증장애경제인

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,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

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2.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3. 중증장애경제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
4.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, 폐업, 영업정지, 도산 및 파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

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유형: 업무보조형(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)
2. 제2유형: 의사소통형(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)
3. 제3유형: 경영지도형(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)
4. 그 밖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

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  
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의4(업무의 위탁)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 
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
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
2.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 
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&lt;신 설&gt;</u>		<p>제7조의3(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)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(이하 “업무지원인 서비스”라 한다)는 직업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경제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경제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</li> <li>2. 여성 중증장애경제인</li> </ol> <p>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,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		

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
2. 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

3. 중증장애경제인이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

4.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, 폐업, 영업정지, 도산 및 파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

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1유형: 업무보조형(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)

2. 제2유형: 의사소통형(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)

3. 제3유형: 경영지도형(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)

4. 그 밖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범위에 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

	<p>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
<p>제11조의4(업무의 위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.</p>	<p>제11조의4(업무의 위탁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</li> <li>2.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</li> </ol>